학원전문세무사의 절세노하우

초판발행 2019년 3월
저자 박재형
발행인 허병관
발행처 도서출판 어울림
디자인·편집 최선숙 강정숙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4번지 이노플렉스 707호
전화 02-2232-8607, 8602
팩스 02-2232-8608
등록 제2-4071호
Homepage http://www.aubook.co.kr

ISBN 978-89-6239-681-2-13320
정가 18,000원

도서출판 어울림 발행도서는 정확하고 권위 있는 해설 및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결과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자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무단전재 및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97조 5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파본은 구입하신 서점이나 출판사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들어가며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 세금은 죽음과 빗댈만큼 중요하다. 또한 학원의 시작과 끝은 역시 세금이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뜻함.

여러 과목 중에서 특히 수학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결국엔 수학을 포기한다고 해서 생겨난 단어 수포자. 이에 못지않게 세금을 포기한 세포자도 많이 있다.

필자가 지난 15년간 정말 많은 세포자를 만났다. “세무사가 알아서 해줄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 물론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건 맞다. 하지만 학원장의 협조가 없다면 세무사도 방법이 없다.

“원장님! 원장님은 더 이상 강사도, 월급쟁이도 아닌 사장님입니다.”

필자와 함께 하는 원장님들은 모두 이말을 한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특히 강사생활을 접고 학원을 개원한 원장님들께는 몇 번을 강조하면서 얘기했었다.

학원장은 어엿한 사업가이자 경영자이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닌 급여를 주는 사람이고, 학원운영의 책임자이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세금에 신경을 써야 하고, 세금을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힘들게 강의하고, 학원운영하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날리면 그보다 아까운 돈이 어디 있을까?

이전에 출간한 출간한 “학원업 세무실무”는 학원장님이 보기엔 너무 딱딱하고, 쉽지 않았다는 불평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시 시작했다. 최대한 쉽게 작성한다고 했는데 독자들의 성에 찰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다만 중요한내용 또는 세법이 꼭 필요한 내용은 [세법에서는]이라는 별도 코너로 배정하였으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므로 생략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부디 학원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 차

part 1. 학원의 시작 — 09

- 세금. 이정도는 알고 개원하자. ····· 09
- 공동개원(공동사업자)이 단독개원보다 절세를 할 수 있다? ····· 12
- 개원자금 준비시에는 자금출처를 주의하자. ····· 14
- 학원자리 임대. 구입시 주의사항 ····· 18
- 인테리어, 학원집기 구입시 세무상 처리방법 ····· 21
- 권리금도 세금신고 대상이다. ····· 24
- 학원등록을 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자. ····· 27

「참고자료」 신용카드가맹 및 현금영수증 가맹 ····· 34

「참고자료」 학원, 교습소, 공부방 설립안내 ····· 37

part 2. 학원운영 — 47

- 장부작성은 학원장의 의무이다. ····· 47
- 우리학원은 간편장부일까 복식부기일까? ····· 49
- 장부 · 기장 왜 중요한가? ····· 52

「참고자료」 간편장부 ····· 55

「참고자료」 복식부기란 무엇인가? ····· 60

- 학원매출의 핵심은 수강료 수입이다. ····· 61
- 학원수입은 수강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 63
- 수강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 66
-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 68

「참고자료」 학원세무조사의 1차 타겟은 수강료 누락이다. ····· 69

- 학원운영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이다. ····· 71
- 학원이라면 꼭 챙겨야할 비용 ····· 75

-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 ····· 80
-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광고선전비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 84
- 임대료의 이중계약, 무상사용은 피해야 한다. ····· 88
- 인테리어, 비품, 권리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이다. ····· 91
- 감가상각을 좀 더 파헤쳐 보자. ····· 96
- 차량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위해서 한번더 생각해야 한다. ····· 100

「참고자료」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102

- 대출이자인데 비용인정을 못 받는다? ····· 104
-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은 따로 있다. ····· 106
- 증거(지출증빙)가 있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 111
- 정규증빙이 없으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을까? ····· 114
- 정규증빙을 제대로 못챙기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117
- 기부금! 좋은일을 하면 세금도 줄여준다. ····· 119
- 학원과 관련되었어도 비용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 ····· 124
- 인건비는 신고를 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 127

「참고자료」 6개월마다 인건비를 신고할 수 있다. ····· 131

- 학원강사 인건비는 근로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 132
- 아르바이트도 인건비신고를 해야 한다. ····· 136
-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다. ····· 138
- 사업용 계좌를 잊지 말자. ····· 145

「참고자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 149

part 3. 세금신고 ——— 150

-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이다. ····· 150

「참고자료」 수입금액 불성실신고유형 ····· 159

- 강사료, 인건비신고는 매월 해야 한다. ····· 160

「참고자료」 인건비신고를 직접해보자 ····· 163

- 연말정산은 학원에서 해줘야 한다. ····· 167

「참고자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요약표 ····· 170

- 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지 말자. ····· 174

-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5월에 한다. ····· 176
- 종합소득공제를 잘 챙겨야 절세를 할 수 있다. ····· 181
  「참고자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185
- 법인학원 학원장이라면 소득공제를 더 자세히 살피자. ····· 188
  「참고자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92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한번 더 줄여보자. ····· 194
- 학원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틀리다. ····· 204
- 매출이 5억을 넘었으면 성실신고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 206
- 증빙과 장부가 없어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 209
- 적자라면 세금신고가 더 중요하다. ····· 214
- 신고를 잘못했다면 수정을 하고, 늦을수록 돌아가지 말자. ····· 216

part 4. 이것도 챙기자 ——— 219

- 4대보험을 잊지말자. ····· 219
  「참고자료」 일자리안정자금 ····· 232
- 세무서 안내문은 꼼꼼히 확인하자. ····· 233
- 절세와 탈세는 한끗 차이가 아닌 천지차다. ····· 237
- 가산세만 아껴도 절세가 가능하다. ····· 240
- 탈세인 듯 탈세 아닌 탈세 같은 것 ····· 245
- 종합소득세를 줄여보자 part 1. 공동사업자 ····· 248
- 종합소득세를 줄여보자 part 2. 법인전환 ····· 251
- 세무조사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 258
- 학원세무조사 ····· 264
- 학원의 주요 세무조사 사례 ····· 268
- 폐업도 뒷탈없이 처리해야 한다. ····· 285
- 부 록 ····· 287